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20 선고 2017가단2310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2. 14

판결 선고 2020.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하남시 D 임야 84,997㎡ 중 같은 도면 표시 68, 71, 70, 69,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4㎡ 지상에 있는 하우스(건물)와 같은 부동산 중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5, 76, 77, 78, 79,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 "근" 부분 90㎡ 지상에 있는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나.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5,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ㄴ"부분 53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하남시 D 임야 84,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종중으로부터 98억 6,4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기재 68, 71, 70, 69,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노:” 부분 144㎡ 지상에 있는 하우스(건물)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도면기재 72, 73, 74, 75, 76, 77, 78, 79,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0㎡ 지상에 있는 가건물을 각 설치하여,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62, 63, 64,65,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신’ 부분 53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영상,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위 하우스(건물)와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이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기재 62, 63, 64, 65,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533㎡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인 E종중의 관리인인 F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위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하우스(건물)와 가건물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종중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종중이 F에게 관리권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승소에도불구하고,원고의

미숙하고 불성실한 진행으로 인해 무의미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청구취지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변론기일도 8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다).

판사 조승우

별지